

##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### 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1월 25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55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gim72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#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혜승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11. .

발 의 자 : 이혜승, 이길호, 신경원  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  
이훈미, 이동한, 박상현

## 1. 제안이유

- 1인 가정과 고독사 증가에 따라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’ 신설(안 제4조제7호)

## 3. 관련법령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군포시 조례 제 호

##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장의 책무)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(시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</u></p>